

# 이사회 회의록(2017-1차)

(2017.04.19 / 11:00 ~ 12:10)

학교법인 대원학원

## 이사회 회의록(2017-1차 )

|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17.04.10 |
|------------------------|

|            |            |
|------------|------------|
| 이사정수 : 12명 | 재적이사 : 12명 |
|------------|------------|

1. 회의일시 : 2017. 4.19(수) 11:00시
2. 회의장소 : 법인회의실
3. 참석이사 : 11명(○○○, ○○○, ○○○, ○○○, ○○○, ○○○, ○○○, ○○○, ○○○, ○○○, ○○○)  
참석감사 : 2명(○○○, ○○○)
4. 불참임원 : 이사1명(○○○)
5. 회의안건 :
  - 의안 제1호 : 정관개정(안)
  - 제2호 : 임원선임(안)
  - 제3호 : 대원여고 「관악예술과」 폐과 승인(안)
  - 제4호 : 2016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결산(안)
6. 회의내용
  - 이○○ 이사장이 재적이사 12명중 11명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이어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 부장이 2016-8차 이사회(2017.02.17) 회의록을 낭독하다.
  - ○○○ 이사가 전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자며 동의하자, ○○○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전회 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 의안 제1호 정관개정(안)

- 이○○이사장이 의안 제1호 정관개정(안)을 부의하고 ○○○ 부장에게 부연설명을 요구하다.
- ○○○ 부장이 본 법인의 정관 제 34조(임면) ①항 교장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며,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4872(2017.3.30.)호의 근거, 2016년12월27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하여 제 35조 (휴직의 사유) 7항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로 개정하고, 교원의 자율 연수 휴직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35조(휴직의 사유)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3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 한다“ 로 정관을 개정하는(안) 임을 자료와 함께 부연 설명하다.

- ○○○ 이사가 법인의 인사운영 안에 따른 교장 임기조정과, 사립학교법 개정 및 관할청의 정관개정 운영지침에 의하여 개정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하자 이어서 ○○○ 이사가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 이사장이 기타 다른 의견을 묻자 이사전원이 없음을 말하다.
- 이○○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한 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은 붙임자료와 같이 가결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안 제2호 임원선임(안)

- 이○○ 이사장이 의안 제2호 임원선임(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연 설명을 ○○○ 부장에게 요구하다.
- ○○○ 부장이 본 법인 ○○○ 이사의 임기가 2017년 5월28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안)임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다.
- 이○○ 이사장이 본인의 안건에 해당되는 ○○○ 이사를 잠시 퇴장토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 ○○○이사가 ○○○ 이사는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장을 역임하시고 법인이사로서 학교 및 법인의 발전에 공헌하시고 계시며, 특히 대외활동을 통하여 대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시고 계시므로 중임하시는 것으로 추천하다.
- ○○○이사가 ○○○ 이사가 언급하신 것처럼 법인에 꼭 필요한 분으로 ○○○ 이사의 추천에 동의하다.
- ○○○이사가 ○○○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어 표결한 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 이사는 중임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사의 임기는 2017.05.28.~2021.05.27.(관할청 승인사항)로 관할청에 승인 요청하고 처리완료 후 등기할 것을 지시하다.
- ○○○ 이사를 입장시키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

## 의안 제3호 대원여고 「관악예술과」 폐과 승인(안)

- 이○○이사장이 의안 제3호 대원여고 관악예술과 폐과 승인(안)을 부의하다.
- 이○○이사장이 특별히 안건에 관하여 참석한 대원여자고등학교 이○○ 교장에게 부연 설명토록하다.
- 이○○ 교장이 본교 관악예술과 과정이 음악과 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리 운영됨으로써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학사운영 전반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많

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평균 입학생 수 및 여학생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과, 이에 영향을 받아 2017학년도 신입생 1학급 34명을 모집해야 하나 현재 12명만이 지원한 상태로 학사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있어 관악예술과를 폐과(2018학년도 신입생모집중단)하는 것으로 자료와 함께 부연 설명한다.

- ○ ○ ○ 이사가 금번 이사회에서 관악예술과를 폐과 승인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그동안의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는지 부연설명을 추가로 요구하다.
- 이 ○ ○ 교장이 학과를 폐지하는 절차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교생으로 실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악예술과 재직교사의 교사 수급 및 현재 재학생의 관리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였음을 자세히 설명하다.
- ○ ○ ○ 이사가 그동안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음악중점학교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으로 부응하며 입시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음을 말하고 폐과 해야 하는 상황에 염려를 표하고, 대신 폐과 후 음악중점학교로서의 위상문제를 언급하고 폐과한 후 대책이나 새로운 기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지를 묻다.
- 이 ○ ○ 교장이 폐과 되면 음악중점과정에서 관악전공 학생을 선발 할 수 있고, 음악중점과정은 지원금으로 운영하므로 학교회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의 사교육비를 절감 하는 효과가 있고, 일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진과 학생지도가 용이함과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다고 부연설명하다.
- ○ ○ ○ 이사가 그동안 대원여고는 특색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인 기대에 무응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폐과해야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폐과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하다.
- ○ ○ ○ 이사가 ○ ○ ○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 ○ ○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어 표결한 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원여자고등학교 「관악예술과」 는 폐과(2018학년도 신입생모집중단)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태호 교장에게 폐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승화시켜 더욱더 발전하는 학교가 될 수 있으며, 폐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관할청과 협의하여 전체적인 학사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다.

#### 의안 제4호 법인 및 각급학교 2016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 이 ○ ○ 이사장이 의안 제4호 법인 및 각급학교 2016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을 부의하다.
- 이 ○ ○ 이사장이 본 안건인 2016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결산(안)에 대하여 ○ ○ ○ 감사에게 감사보고를 요구하다.

○ ○ ○ ○ 감사가 2017년 4월 4일~7일까지 김영도 감사와 법인 및 각급학교 결산 감사를 실시한 바 제반 증빙문건, 장부정리 및 결산서의 작성이 정확하였고 세무 및 회계 처리가 적절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 이사장이 본 안건인 2016학년도 법인 및 각급학교 결산(안)에 대하여 이정일 부장에게 자세한 부연설명을 요구하다.

○ ○ ○ ○ 부장이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결산(안)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1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의거 결산한 법인 및 각급학교의 세입, 세출 세부 내역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붙임 자료와 함께 자세한 부연설명 후

○ ○ ○ ○ 이사가 감사결과 결산회계 처리가 적절하며, 각급 학교별로 집행된 결산(안) 설명을 들어보니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투명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으므로 2016학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동의하자, 이원희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어 표결한 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의 수지차액 30,589,060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으로 당기순이익 0원 및 재무상태표에 자산총계 938,337,153원 부채와 자본총계 938,337,153원으로 마감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는 세입 86,486,842원 세출 86,480,510원 차입잔액 6,362원으로 마감하며, 대원국제중학교 세입 결산액 6,383,089,004원 세출 결산액 6,367,575,940원 차입잔액 15,513,064원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세입 결산액 9,921,716,651원, 세출 결산액 9,711,709,887원 차입잔액 210,006,764원으로, 대원고등학교 세입 결산액 11,051,925,271원 세출 결산액 11,014,324,591원, 차입잔액 37,600,680원, 대원여자고등학교 세입 결산액 9,685,823,102원 세출 결산액 9,652,940,478원 차입잔액 32,882,624원으로 가결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가결된 각 안건은 법 규정을 준수하고 관할청의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달라는 지시 후, 간 서명자를 본인과 ○○○ 이사, ○○○ 이사를 지명하자 이사전원 일치로 승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12:10)

2017. 4. 19.

학 교 법 인 대 원 학 원

의 장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이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감 사 ○ ○ ○

감 사 ○ ○ ○